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4.7.~4.15.)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299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0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1. 04. 15.)
기획행정 위원회 (1)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경식 의원	수정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호 의원	원안
경제건설 위원회 (8)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형연 의원	원안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형원 의원	원안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형원 의원	원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04. 15.(목)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심영섭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최재연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고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총장, 교직원, 행정기구 및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학과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조교수이상의 교원의 신규 임용 및 승진에 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경식 의원



박효동 의원



김규호 의원



김형원 의원



최재연 의원



권순성 의원



남상규 의원



박윤미 의원



박인균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미 의원



심영섭 의원



원태경 의원



위호진 의원



이종주 의원



조성호 의원



한금석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구)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명을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를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이를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의 야생동물 포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규호 의원



김경식 의원



박병구 의원



정유선 의원



한금석 의원

■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원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교통법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이병헌 의원

■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및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 및 여성창업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제품 개발, 인력난 해소 및 판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경제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여성기업이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 공동발의 :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형연 의원



허민영 의원

고용확대를 유도하여 고용률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자신의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재원 조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 · 보급하고,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기관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김형원 의원



이병헌 의원



정수진 의원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도의 평가기준을 준수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를 두고,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김형원 의원



윤지영 의원



이병헌 의원

■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이병헌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2)

도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또는 마을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김혁동 의원



심영섭 의원



이병헌 의원

■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 공동발의 :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박상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2)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던 크루즈 모항 · 기항 유치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관광상품개발, 국제행사유치 등의 크루즈 관련 모든 사업이 “강원도 관광재단”으로 이관되었고, 2020년 10월 28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양관광센터가 해산되었으므로 사문화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형원 의원



김수철 의원



박상수 의원

▣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에 자신의 사업장을 둔 벤처창업자의 투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창업 인프라 확충 지원, 자금 연계 지원,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벤처창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벤처창업자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 모집하고,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벤처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벤처창업 포럼, 전문가 컨설팅 및 그 밖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